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(염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59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9.

발 의 자 : 염태영 · 김동아 · 이학영
김준혁 · 윤후덕 · 윤종균
복기왕 · 김승원 · 조승래
안태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신호등,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주·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하고 있음.

그러나,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의 색상은 일반적인 시각 능력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색약·색맹 등 색각이상자의 경우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, 이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정할 때, 색각이상자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 후단 신설).

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색맹·색약 등 색각 이상이 있는 운전자 및 보행자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